

제432회 국회
(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2월12일(목)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상정된 안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6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6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7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7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7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7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7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7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7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7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7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7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7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7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7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7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7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7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7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7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7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7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7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7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7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7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7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7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7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7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7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7

(09시18분 개의)

○소위원장 김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예.

○김형동 위원 언론 앞에서 오늘 급작스럽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개최된 점 그리고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누가 있습니까, 언론이? 아까 연합 계셨는데.

○김위상 위원 언론 들어오라고 그래요.

○김형동 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김주영 김형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알기로 국회법상으로 소위까지 포함해서 상임위는 여야 간사의 합의,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소위가, 저는 합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당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늘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좀 이따 전체회의도 하겠지요—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노위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나름 모범적인 국회 모델이다라는 평가도 받아 왔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100여 건에 가까운 법률안을, 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법률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본 위원회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호응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급작스럽게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글썄요, 오늘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강득구 위원이 자주 쓰는 법률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을 겁니다.

김주영 위원장께 무책임한 회의 진행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들께

서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야가 조율된 후에 소위를 열어도, 그게 훨씬 더 빠른 입법 진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안호영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가지고 충분히 숙의가 되기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부터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일정 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정 합의가 어려웠고, 지난주에 우리가 합의해서 회의를 열었고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그때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했던 부분들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소위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금년 예산에 포함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 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주영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로 환노위 내에서 중요한 법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 더 숙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소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소통하고 또 서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깨 버리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산안법에 대해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기업을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 여기 전부 노동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기업들이 등록말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겁이 나서 똑바른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사고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환노위의 위원들이고, 그렇다라면 노동자들 생각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노사 간에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면 그 부분도 사용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편협한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더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생각 속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돼 있다, 그 예산 천천히 쓰면 되지요. 안 되면 넘겨 다음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한 분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주위 몇 사람에게 의해서 눈치를 보는 건지……

○소위원장 김주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위상 위원 여기 박홍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이 부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너무 과중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또 근로자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부분도 전부 다 책임 지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파파라치 양산하는 거 우리가 작년 예결소위에서도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불법 유탄이나 이런 거 하면 바로 찍어 가지고 신고포상금 받으려고 했던? 그 주위에 한 10명이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그게 국력의 낭비고 모든 비용의 낭비지.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줄어들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전부 인터넷교육 해 가지고, 전부 다 쓸모없는 그런 교육들 시켜 가지고 사고는 더 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현실 아니냐고. 그러면 직접 면 대 면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법률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고. 또 중처법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있고 과징금 처벌을 가져야 되고 이게 뭐냐고. 이중적인 처벌을……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업 하겠냐고.

좀 더 숙의를 해서,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공감하는 법이니까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처리할 산안법 등 민생·안전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치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2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오늘 산안법 등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 법안은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삶에서는 늦어지는 만큼 고통받는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이 되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숙의와 지연은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연 작전에 상임위가 팔려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아니, 지연은 아니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김태선 위원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논의가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수차례 논의도 되고 숙의가 충분히 됐고 지연이 아니라면 오늘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노동자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렇게 절박한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통과 못 시켰어요? 다수당이었고, 하루라도 더 빨리하려 했으면 그거를 5년 전에 그렇게 하지. 그때는 전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5년 전에도 다수당 아니냐.

○**소위원장 김주영**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크게 봐서 5개 정도의 법안 내용들을 2월 중순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논의하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고,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국회 때도 다뤄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서너 차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산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폭염 시에 작업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한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사례, 용인 SK하이닉스 건설 공장에서 11월과 1월 달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안법상 공기 지연의 근거로 명시를 하자라는 이런 법안의 내용들 그리고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어찌면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법안들인데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법안의 논의 그리고 검토, 그 법안이 영향을 미칠 결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리고 책임을 놓아서 안 된다. 11월·12월과 1월 달, 어찌면 저희가 이 법안을 조금 더 논의하고 하루빨리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정리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 그래서 충분히 논의됐던 법안이고, 오늘 여야가 머리 맞대고 이 법안들을 반드시 함께 처리하자 이런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어느 기업이, 사람 목숨 안 아까운 기업이 어디 있고.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 간에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런 마음이야 다 있지.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양당의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요.

○**김위상 위원**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재 줄어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문구로 법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줄겠네, 그러면.

○**소위원장 김주영** 기자분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하면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듣고요.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1)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0)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0)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6)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2)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7)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5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4)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7)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09시35분)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정부의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제126조의3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보수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이거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갈 때 국선 변호사를 쓰는 또는 노무사를 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초심부터…… 세무사나 또는 변리사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하자는 우재준 의원안이 굉장히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재준 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재준 위원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청구 단계, 심사 단계, 재심사 단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우재준 법안은 심사 단계—두 번째 단계지요—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자는 거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첫번째 처음 청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제공하자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거나 국선변호인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라는 건데 취약계층을 판단함에 있어서…… 산재라는 게 어느 시기에, 그러면 질병 산재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어느 사업장에서 결국 이분이 산재를 입었는지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이게 청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구 단계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와야 사업장이 특징이 되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분이 그때 당시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청구 단계가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 오히려 국선변호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청구 단계가 아닌 심사 단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검토가 좀 됐는지 여쭙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청구 단계까지 확대해 줘 버리면,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들은 현재 상태에는 거의 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급여가 없거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몸이 아프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선변호인 제공한다는 그 취지에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주영 정부 측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되는 여러 가지 서류 중 자신의 급여라든가 혹은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증빙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 달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승인 절차는, 첫 번째 신청 절차에서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 당시의 급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증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별해서 취약계층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연봉이 1억 넘어가는 그런 사람한테 이걸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사, 업무상질병 판정위에 신청할 때 이미 급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또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전부 다…… 제가 예를 들어 직전 직장은 연봉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쉬고 있거나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인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근로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휴업급여를 제공할 때는 제공해야 될 평균을 산정해야 될 때, 산재가 발생한 그 시점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휴업급여를 제공해야 될 평균급여의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 이전의 3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을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거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추정해서 이미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취약계층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재준 위원님, 저도 노무사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했었는데 초심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재심에 가서 이길 확률도 적다고 그러고요. 그게 취약계층들이 대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다른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제84조(안전인증)에 있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김주영** 합의는 한 걸로 넘어가고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동 위원** 본부장님, 글자상으로 보면 안전인증에 대한 면제 범위를 넓혀 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안전인증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실제로도 지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까 보면, 처음에 답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조문 자체가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넓혀 주는 겁니까?’ 여쭙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형동 위원 확대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 뒤에 거는 취지인 거고, 두 번째 설명은. 제 질문이 오히려 안전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 범위를 줄이는 게 안전보건법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안전인증대상기계는 좀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다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 안전인증 대상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예, 좀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어떤 기계에다 붙여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김형동 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그게 일종의 경유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경유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가공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예, 그거는 저희가 관세청이랑 협의해서 미리 목적을 확인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서류상 정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재해나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니, 그러면 법 만들 필요도 없지요, 사고가 나질 않는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는 안전인증대상이었고 앞으로는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 건수나 퍼센티지가, 이 법을 새로 바꿀 만큼 케이스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국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입법이 돼 있어서 산

업체가 이거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계에서 제안이 와서 한 건입니다.

○김형동 위원 아주 많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2025년도에 500건이었고요. 지난 5년간 하던 3500건 정도 됩니다.

○김형동 위원 3500건, 5년 동안에?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예.

○소위원장 김주영 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 배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2항에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항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등에게 도급인에 대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여 마찬가지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서 작업중지 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서 현행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외에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서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5항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관련 작업으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작업중지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현행 중대재해 발생에서 의식불명, 생사불명, 중상해재해 발생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붕괴, 화재·폭발, 누출 등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서 현행 ‘중대재해가 발생’에 추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벌칙에서 시정조치 이행 시까지 작업중단 의무 위반 시 3년, 3000만 원 이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작업중지 행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김형동 위원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김형동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안 자체가 충분하게, 법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김형동 위원 그사이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정혜경 의원안이 더 낫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러프하게나마 법에 다 적시하지 못하면 영으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라도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사이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본부장님 일처리는 항상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저희들이……

○김형동 위원 지금 여기 와서 다 설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사전에……

○김형동 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지적한 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할 때 정부안—지난주 말입니다—오늘 바뀐 게 뭐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정부안의 내용에서 우려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현장에 작업중지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개구부 덮개 상태가 불량하다, 지게차가 과속을 했다 그다음에 버킷 안전핀이 미체결됐다, 작업중지 구간 결빙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법령에 명문화하기 좀 어려워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판례라든가 현장 상황을 포함해서 개정안 설명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향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 법 통과시켜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유감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제가 원고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김위상 위원 본부장이 야당한테만 설명을 안 온 거 아니냐? 여당은 다 설명받은 거 아니냐? 그거 맞지 싶은데.

○김형동 위원 여당은 별로 법에 관심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입니다.

조금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짧게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급박한 위험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소위원장 김주영 그건 똑같은 이야기고요. 다음부터는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은 설명·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소위원장 김주영 전체적으로는……

○김위상 위원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았네.

○소위원장 김주영 간단하게 받았습시다.

○김위상 위원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게든 어쨌든 보고를 받았네. 그러면 다음번에 야당 간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날 나왔던 이야기들……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이해를 좀 높여서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하게 더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김형동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내가 서운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관계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말씀한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김형동 위원 제 취지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소위 열어 통과시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설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위상 위원 보고는 확실히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시간 있는데 소위원회 또 열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저는 정혜경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덜 익은 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김형동 간사님도 사실은 그날 나왔던 내용들이 반영된 부분이니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글자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글자상으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법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실은 저희가 제시한 안이……

○김형동 위원 맞지요. 똑같잖아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정혜경 의원님 안을 일부 반영한 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이용우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지난번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김형동 간사

게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안 되면 현실에서 운용할 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ILO라든지 여러 외국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사업주가 됐든 노동자 측이 됐든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 일일이 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됐든 가이드라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작업 착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도 국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래서 지금 보완할 부분들이, 어차피 시행령에 보완할 내용들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 주시고.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다 완벽하게 담아서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령에 보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위원장님, 노사 간에 불안한 사업장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급박한 위험,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이 좀 불안한 이런 사업체에서는 이걸 서로가 이용할 수도 있다.

○소위원장 김주영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한 해에 26만 건을 작업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은 하이닉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작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중지 요청을 한 건이 있느냐’, 26만 건 중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는 게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장의 안전사고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국감에서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작업중지권 이 부분으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노사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서로 협조가 되는데 노사 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분명히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의 손실도 굉장히 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방금 김위상 위원님께서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뒤에 나올 파파라치도 비슷합니다. 어떤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고발을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무고죄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건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역에 가면 웬만한 건설업체, 노조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환경 관련되는 현장에 수시로 기자님들이 드나드시지요. 내가 애초에 명확성과 관련

해서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오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만약에 신고제 오남용했을 때 대표적인 게 허위 신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나 현장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복안은 있습니까? 제도 설계에 그것까지 고민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실제로 안전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작업중지 작동될 수 있도록 향후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가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제도를 물어봤는데, 주관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법을 논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판단하는 데 참조 사항이지.

○소위원장 김주영 혹시라도……

○김형동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업중지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했다, 고의적으로 악용을 했다, 그 피해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당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어쨌든 어떤 제도든 간에 부작용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가장 급박한 위험에 있어서……

○김형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김위상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 본 것 같아요.

정혜경 의원 예를 들면 학교 급식소 여기 보니까 도저히 저거 한테 본인 컨디션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안전법상에 들어 있었지만…… 하루 급식 안 해 가지고 애들 피해, 같이 일했던 조합원들의 급여 문제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현실화되면 다시 입법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형동 위원 아니, 저는 답변도 충분히 준비되고…… 지난번에도 전체회의에서인가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혀 입법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김위상 위원 방금 무슨 제도든 간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 현장에 참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여야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도 해 봤을 거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날 작업 반장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나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일부러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제도적으로 끝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남용시킬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노동부에서 촘촘하게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소시킬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법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거기에 보완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노동부의 고위직에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김위상 위원님, 이 법안에 보면 사용자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동의가 돼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작업중지를 현장

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중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지도를 통해서 사업장에 맞게끔 작업중지를 어떻게 행사하고 작업중지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는 박정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정안대로 처리를 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혜경 의원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혜경 의원 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보해서 정혜경 의원안으로 의결하시 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아무튼 서로 의견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견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 지 않습니까?

○**김위상 위원** 아니, 정혜경 의원안 넷이나 하자고 하는데.

○**정혜경 위원** 5명이지요.

○**김위상 위원** 5명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정부 수정안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 습니까.

○**정혜경 위원** 박홍배 위원님 하시면 5명이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표결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표결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런 안을 반영해 통합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정도 항의 는 정부도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합의 안 했어요. 이거는 합의 안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요, 잠정……

○**박홍배 위원** 표결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표결은 이따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이따가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률안 배포해 주십시오.

정혜경 의원님 안으로 하면 동의합니까?

○**김형동 위원** 정혜경 안이 훨씬 낫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그간 행 정해석에 따라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어 온 폭염·한파를 법률에 명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 도급인에게도 부여하고 현행 건설업·조 선업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조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수 사망을 일으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로서 등록말소 요청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바로 말소 처리되니까? 등록말소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부터 이 요건에 맞으면 바로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관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고 난 다음 다시 또 영업정지가 된 경우…… 영업정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 세 번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예를 들면 영업정지 두 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요청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등록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부터 카운트 시작해서 그때부터 영업정지 카운트가 돼서 아무리 빨라야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이 법 만들고 법이 일종의 겁박용으로 쓰이고 현 정부에서는 이거 집행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 후에요?

한번 몇 개 여쭙볼게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하도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글자로만 박제가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소위원회가 두 번 열렸었고 그때도 본부장님 계셨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내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왜 와서 설명을 안 하세요?

김위상 위원님, 파파라치 관련해서 노동부의 설명 받으셨습니까, 보고?

○김위상 위원 나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은 다음 것 아닌가요?

○김형동 위원 다음 거예요?

○김태선 위원 그것은 다음 것입니다.

○우재준 위원 저도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산재 1위, 2위, 3위가 공기업이더라고요. 한전 이런 데던데 한전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현재 등록말소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설사……

○우재준 위원 건설사?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김형동 위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의 형평성 문제를 우재준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이거는 기업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임의로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존에도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법령에 구체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동 위원 제 말씀은 공기를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좀, 특히 관급은 그게 심하겠지요.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에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요구를 누가 해왔냐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이런 요구들은 시공사,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야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거는 기업이 건설공사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시공사로서는 공기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김형동 위원 그다음에 159조, 영업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징금·과태료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말소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3년 후에 시행이 된다는 취지도 황당하네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왜 건설업만 등록을 말소시키느냐? 우재준 위원 말씀대로 공기업이 재해가 가장 많다. 민간은 자율규제든 시장 기능에 따르는 또는 법의 엄함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공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 어제까지 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는 안 하고 자꾸 장래만,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집행이 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법 자체가, 법의 기능이나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형평성의 문제하고 기발생한 거와 관련돼서 입장이 어떤지 노동부가 한번 밝혀 줘 보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가 산재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고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부터 먼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김형동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이 부분에 대한 산재도 만만치 않게 많다. 비교를 해서 건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무직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산재가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은 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건설업이기 때문에 익스큐즈(excuse) 해줘야 되는 그런 마진, 여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는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업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여쭙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건설사가 산재 사망사고의 45%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사망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영업정지 두 차례 이상 됐을 때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김형동 위원 그거는 법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업만을 특별히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반대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업이기 때문에 잦은 산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배려나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엄단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질문 아직 안 끝났고요, 설명이.

두 번째, 기발생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 업종 포함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 제도로 규율하고 규정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넓혀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중요한 방식, 더 좋은 방식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 믿어 달라 이거밖에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주영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건설 부분만 이런 영업정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공기업에서 하는 건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나 상수도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때리면 국민에게 바로 피해가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하고 건설 영역하고는 구분해서, 똑같이 본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향후에 두 번 발생하고 또 한 번 했을 때 3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제가 이야기한 건 사실은 공공서비스 영역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아니고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 철학 자체에 동의를 많이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건설사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만 사고가 난다 이 대전제에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 사고는 왜 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사업을 완전 없애는 것, 면허 취소시키고 사실상 강제 폐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 그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공기업 못지않게 생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자기 인생 걸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너무 가볍이 여기

는 듯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점에서 제가 공기업 이야기를 좀 던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의 상황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요?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등록말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 법이 예전에 통과가 돼 있었다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대건설의 직원이 한 7000명이나 되고 또 그 앞뒤로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나 이런 인원들을 보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바로 등록 말소·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전도 아무리 공공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사망사고가 7명이 났는데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전기 내릴 겁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해 줘야 되지, 국민이 피해 보는 게 작다고 해서 괜찮고 또 모든 국민들이 폭넓게 피해를 본다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법 적용을 갖고 가서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저도 정부 측에……

지난번에, 만인율로 따져서 비례해서 과징금도 물리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 안에 비율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리고 지금 등록말소도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로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는 내용들 충분히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취소가 되고 과징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요청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시키고 이렇게 됩니까, 그분들? 요청하면 좋은 사람, 이쁜 사람들은 봐주고……

○소위원장 김주영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김위상 위원 또 정부에 좀 비협조적이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말소시켜 버리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생각조차 들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소위원장 김주영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소위 말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보여지는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기간이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3년 안에 이렇게 삼진아웃 될 정도의 사업장들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로 보여지거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현행 규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3년 안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것이 건설업을 포함해서 사업들을 다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보면 레인을 9년으로 잡고 삼진아웃 제도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면서 이 법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항이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돼 있고. 무조건 아웃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실제로 기계적으로 3년 안에 세 번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 말소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상 비례의 원칙 등등 이런 부분들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또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익과 이런 것들을 다 비교 형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이런 요청이나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무조건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휘청휘청 날아간다 이런 방식들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한 부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최근 3년간 저희가 영업정지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된 건설사가 11개사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수준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등록말소 요청까지 가는 케이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말소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명이 좀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꾼 것 3년 그 얘기는 2항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항 1·2호 각호는 알짬없어요. 알짬없다고요. 물론 일으켰느냐 여부, 발생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나눠 놓기는, 조금 바꿔 놓기는 했지만 3년간 이거는 거의 논의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한 분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자꾸 고인을 얘기해서 그런데 고 오요안나 사건 그거 중대재해 사건인 거 아시지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 중대재해입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김형동 위원 답을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 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면허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수해야지요. 가능성 없는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1항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이용우 위원 두 명 이상 사망해야 됩니다, 요건이.

○**김태선 위원** 여기서서 두 명 이상입니다, 이 법은.

○**김형동 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 그걸 가지고 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고용유발효과가 엄청 큼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꾸 현대건설 얘기해서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피해를 입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목공, 철근공, 요즘 미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교하게 설계를 하십시오, 하더라도.

기왕 하나 여쭙볼게요.

지난번에도 어느 법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층적인 사용자들이 쭉 몰려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여러 협력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 말씀이?

그래서 작업중지 신고입니까, 아까 논의했던 거나 그다음에 본 말소 건이나 과징금이 나 과태료 신고 대상이나 이것을…… 지난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작업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원청이 아니고 하청이어도 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됐습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청업자가 사망사고 일어났거나 덤프 지입해 가지고 들어온 분이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원청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진짜 하려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63조에 도급인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렇게 해서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도 산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다층적인 구조였을 때 제일 밑에 있는 하청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운다고요? 제 말씀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얘기하시는 게.

또 하나 여쭙볼게요.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납품하던 분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금 사건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김형동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할 때도 신고에, 그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로자 안에 이른바 하도급 관계인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많은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건 언급이 없네요.

○**박홍배 위원** 아니요, 작업중지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형동 위원** 넣었습니까?

○**박홍배 위원**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그게 작업중지권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조치를 못 할 수도 있어서 그게 51조 3항에서……

○김형동 위원 51조 3항?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예.

○김형동 위원 관계수급인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그 밑에……

○김형동 위원 끝까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만약에 수급 관계 계약이 없다 또는 거기에 들어와서 임시로 일하거나 납품하는 업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신고권을 줘니까, 안 줘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중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권을……

○김형동 위원 두 개 다 물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작업중지 요구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요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김형동 위원 작업중지 요청권을 물어봤는데……

○정혜경 위원 요청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김태선 위원 요청은 가능하겠지요, 작업중지는 안 되는 거고.

○김형동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면허 회수와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망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말씀하신 게 제63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사례별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소속이 누군가 묻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되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그렇지 않고 63조 위반이라는 사항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63조 위반 여부들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게 늘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산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른바 1인 기업—대부분이 지입차 이런 분들이지요—그런 분들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그냥 일반론으로 빠져나가시려고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그것도 저희가 63조 위반 여부를 따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정지 요청을 할 때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영업정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 이후에 영업정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법은 부품을 만들어 놓고, 노조법 2조하고 똑같아요. 일반론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제외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지. 고용관계, 주종관계가 없는데 밥 배달 온 사람 다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게차 운

전하다가 자빠진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루 잠깐 와서 일하다가, 대신해서 온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그 부분……

○김형동 위원 됐습니다. 자꾸 일반론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정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러면 정부 폐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례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고 원칙적 기준을 넓혀 주는 게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있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집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법을……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실제로 원청이 공사를 따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에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진짜 다단계 형식으로 전부 다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나만 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형틀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원청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틀을 도급받은 전문 건설업체만의 책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 도급인의 책임으로 볼 거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청이나 또는 전문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도급에 책임을 전부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큰 건설업체는 전부 다 빠져나오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형틀공 또는 철근, 미장 이런 데서 전부 다 손실을 입는 겁니다, 결국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 내려온다면.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도급인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게 원청이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이 부분이 다단계 하청 밑에서, 최하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그 중간에 힘 있는 조직들은 다 빠져 버리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10명씩 15명씩 서로 모여 가지고 하청받아 가지고 억지로 먹고사는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김위상 위원 전문 건설업체도 보면 지금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촘촘한 계약서나 이런 걸 안 했겠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서는 다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최하 도급을 받은 그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원청도 함께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중간에 어디가 사고가 나든 그거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지금도 63조에 의해서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100% 다 책임집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김위상 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지금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63조에서 원청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원청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자, 이제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자신이 없습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떠넘겨 가지고 업체만 전부 다 죽이고. 정부가 하는 게 뭘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김주영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합의는 아닌데.

○소위원장 김주영 잠정 합의.

얼른 배포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정수, 위원회의 기능·역할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58조의2에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위상 위원 오늘 날 잡았나? 민주당 위원님들 날 잡았습니까? 뭐 하나도, 전부다……

○김태선 위원 이것 계속했잖아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요.

○박홍배 위원 아니, 그만큼 토론했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용우 위원 너무 많이 다뤄 가지고.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논의를 안 한 건 아니고……

○김위상 위원 이걸 허용한단 말이야, 이거를? 정말 관대하십니다.

○박홍배 위원 아니,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해요? 회의록을 보면 이게 어느 자 회의록인

지 구분도 안 돼요.

○**김위상 위원** 박홍배 위원님, 진짜……

○**소위원장 김주영**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홍배 위원**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년 내내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김위상 위원** 세 번, 네 번이고 열 번이고 하려면 해야지. 이런 부분들 양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소위원장 김주영** 발언권 얻고 발언하여 주시고.

자, 우재준……

○**박홍배 위원**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 같은 얘기를……

○**김위상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지.

○**소위원장 김주영**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아니, 그리고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발언권 얻으신 분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논의 안 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일몰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다음 건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그거는 잠정……

○**우재준 위원** 말고 포상금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 3년 정도 일몰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기는 어려울 거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저는 오히려 이 법의 취지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면서 일정 부분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3년이 끝났을 때는 일단은 자동으로 이 제도는 없어지되 혹시나 그때 평가해 보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싶으면 다시 이어 가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 기간을 정한 일몰제를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역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유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그 점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정부 측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원래 법률 개정할 때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몰입니다. 원칙

적으로는 그 시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 시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과정이고요. 잠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법률의 경우에 명확하게 일몰제를 선언하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나 제도 시행의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일몰제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일단 내용적으로 매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 실태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 법안의 향후 진로랄까요, 개정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되 일몰제를 규정하는 것은 지금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저도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제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매년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지요.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이 말씀하셨는가, 입법 수를 의원당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걸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야 다 얘기했는가? 지금 너무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입법의 무거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특히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이렇게 격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작동 제대로 하겠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혀 안 해 봤던 것을 새로 한 번 할 때는 일몰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되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공무원위원회법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5년 일몰일 겁니다. 그때까지 공무원 문제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그때까지 공무원들이 겪는 차별을 입법부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부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내용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은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매출 기준이니 수입 기준입니까, 소득 기준이니 그거 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정금에도 이만큼 과한 과정금 기준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과정금은 이른바 기업이 얻은 부당이득을, 사회로부터 가져간 부당이득을 토해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재해를 당한 분들을 어떻게 두텁게 케어하고 보호할 것이냐라는 제도를 먼저 우리에게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문제 많고 그러지만 일몰제 형식으로 한 3년간 운영해 보는 것이 정부 측에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일몰제를 시행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지금 의견들이 조금 나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3년 뒤에 다시 그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넣고 오늘은 매듭을 짓지요.

○**김위상 위원** 일몰제를 해 놓고 그리하면 안 됩니까?

○**우재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산재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전문적으로 팀을 길러서 그걸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거를 다시 없앤다라는 게 또 다른 사회 갈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먼저 3년이라는 일몰제로 못 박아 두고 그때 가서 팬찮으면 연장하는 방식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형동 위원** 3년 후면 정권도 바뀔 건데 그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우재준 위원님 내용도 포함시켜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부대의견 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예, 3년 뒤에 평가……

○**김형동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터위원회 조직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합의 안 했다니까. 자꾸……

○**소위원장 김주영** 잠정 합의.

○**김형동 위원** 잠정 합의도 합의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얼른 배포해 주십시오.

다 와 갑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산재 예방에 대해 충분한 노력 유도를 위해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실질적 책임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횟수,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구체적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근로자 수 대비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그다음에 산재 예방,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응한 노력 정도에 따라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한 과징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이게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금 5%. 그러면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영업이익 30억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

○**김위상 위원** 30억도 영업이익을 내기가 그리 쉬운 게 절대 아닌데.

○**소위원장 김주영**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 이것도 이미 논의가 참 많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소위 논의 사항에 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산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도 이미 산재가 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의 큰 방향에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는 게 정말 기업이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일어나는 건가?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에 무조건 그냥 과정금을 부과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는 일정 부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때 근로자들, 산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해 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 고통을 함께 부담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피해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걷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걷어 간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서 산재 피해자들한테 환원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피해 근로자한테 직접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도 반대를 할 건데요.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게 국선노무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보상금 자체를 올려 줘야 됩니다. 보상금 자체를 많이 올려 주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기가 좋은 유능한 노무사 써서 그다음에…… 많이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은 노무사 비용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과정금도 과정금을 걷어 갈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줘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 발의한 거지만 위자료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자료도 많이 올려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과정금을 걷어 가는 건 산재 예방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반대로 고통을 분담해 주는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들의 기업 의지 위축에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좀 두텁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정금 자체를 두텁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잡았

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1~3항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1~3항 국선노무사 건 이야기를 좀 더……

○소위원장 김주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아직까지도 이 건에 관해서는…… 노무사회의 입장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노무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전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적용되는 시행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의, 그러니까 첫 번째 신청 기간이 아니고……

○우재준 위원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반대라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저희 보좌진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성명서가 아마 노무사회 입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성명서에서는…… 그런 입장을 들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게 확인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사회하고, 오랫동안 불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국선노무사 비용에 대해서 체불이 많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불신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노무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그 점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소위원장 김주영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지금 성명서 내용에서는 최초 요양 단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문자격사로서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 단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니까 노무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일정 부분 타협한다면 우재준 의원안—제 안이었지요—심사 단계의 건은 동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예, 성명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게 읽히는데 맞나요?

○고용노동부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예.

○고용노동부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작년 12월 달에 한국노무사회하고 류현철 본

부장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당시 건의된 내용도 최초 청구 단계가 아니라 이의신청 단계부터 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대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 종목은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입증 책임이 있고 이 단계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건데 산재 신청은 아예 최초 신청부터 산재 신청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부담을 국선대리인을 붙여 줌으로써 덜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국선세무대리하고 국선노무대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토론을 지금 다시……

○김형동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굳이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공단에서 신청 단계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른바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 본 사람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삼성화재가 거기에다 수입료를 대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본부장님 고민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노무사회 가서 의견 좀 여쭙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설득해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 같은데 만나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작년 12월 10일 날……

○김형동 위원 작년 12월 말고 지난주에 이거 할 때, 다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통일된 의견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토론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서 가지고 답변하는 게 너무 비논리고 무책임해서 제가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하고 이걸 다르다? 근본적인 한계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분들, 흔히 말해서 국가가 국가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대신 신청할 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이 해관계단체, 최대 단체인 노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클리어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굳이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됩니까?

○소위원장 김주영 이제……

○우재준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 2월 5일 자 소위 때 제가 못 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이날 못 들어왔는데……

○소위원장 김주영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앞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부분, 일단은 아직까지 노무사회에서는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오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두 번째는 이거 그래도 제가 낸 법안 아닙니까? 제가 낸 법안이고 하니까…… 이거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의 기일만, 다음번으로 연기해 주시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충분히 의견 개진은 됐다고 보고요. 아까 계속해서……

○우재준 위원 아니, 다른 건은 많이 됐지만 이 건은 그만큼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다음번 소위에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주영 그런데 이게 원법의 취지가 취약 노동자들을, 산재 노동자들을 보호 하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우재준 위원 취지는 같아도 법이라는 게 한 개 차이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산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용우 위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우재준 위원 물론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2월 5일 빼고는 다 왔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시다. 2월 5일 하루 못 왔는데 그날 모든 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도 노무사회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이 덜 됐고 그사이…… 2월 5일, 사이에 노무사회를 만난 적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원장 김주영 발의하신 우재준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정 합의를 하고 우리가 넘어갔 고……

○우재준 위원 아니, 잠정 합의지 않습니까?

○김태선 위원 토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그래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지금 거치려고 그러 는 겁니다. 그래서……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최종 의결하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도 우재준 의원처럼 이렇게 당신이 낸 법률안이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위원들 3명에게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체 의결과 관련해 금방 정리해서 오 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11시에 안 들어오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예. 그래도 개별 헌법기관이 낸 법률안인데……

○소위원장 김주영 들어오실 거지요? 딱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면 지금 58분이기 때문에 11시 3분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분. 정회는 아닙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양해말씀 좀 구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주영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김형동 위원 예, 기회 주시면.

○소위원장 김주영 그러면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42.195km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195백에는 안 남았는데 옳어지면 그것 도 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 끝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40km 같이 뛰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들어온 면허회수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법이 너무 숙고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몇몇 위원님들이,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일몰제나 아니면 국선대리인 절차와 관련해서 논리 모순도 있지 않습니까? 우재준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주셨고 조금 더 조정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작성하고 설 전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심산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유감이고 소위 의결에 저희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닫힌 공간이어서 이따 전체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주영 박홍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같이 들어 주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홍배 위원 저는 오늘 안건 중에서……

○이용우 위원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주영 의결하기 전에는 잠시 계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가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앞서 잠정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위상 김주영 김태선 김형동 박홍배 우재준 이용우 정혜경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하창용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